

보 도 자 료

- 제 공 일 : 2005. 4. 28
- 제 공 자 :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
- 과 장 : 정 병 학
- 서기관 : 박 상 민
- 전 화 : 500-1788

이 자료는 2005년 4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농업인 보호를 위해 중고 트랙터 등 고가 농기계에 대한 품질보증제 도입

= 농기계대리점 등에서 엔진 등 주요부위의 작동상태 등을
점검한 점검기록부를 발급하고, 30일간 품질보증 =

□ 중고 트랙터를 구입 이용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
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중고 트랙터에 대한 품질보증제가 도입
된다.

○ 농림부에 따르면,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 등 1천만원이 넘는 중고
농기계 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고 농기계에 대한 품질보증
필요하다고 밝혔다. 따라서, 우선 **중고 트랙터에 대해 품질보증을
시범 실시한 후** 점차적으로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 등으로
확대할 계획이다.

○ 중고 트랙터에 대한 품질보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농기계 대리점과 정부가 지원한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중
품질보증제 실시를 희망하는 자는 중고 트랙터 주요부위의 작동
상태 및 수리내역 등을 확인·점검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후
품질보증필증을 부착하고

- 둘째,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 품질을 보증하되, 사용시간이 40시간 또는 주행거리가 200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

※ 트랙터에는 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음

- 셋째, 품질보증 지도·관리기관(농협중앙회, 한국농기계유통협회 및 정부지원 민간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단체)으로 하여금 점검기록부 및 품질보증필증 발급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확인·점검토록하여 허위 품질보증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자금 회수 조치등의 필요한 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
- 넷째,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보증자와 수요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히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농림부에서 지원한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, 중고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.

- 이에 따라 트랙터, 콤바인 및 승용이앙기 등의 고가 중고 농기계 용자대수는 '02년의 526대에서 '03년에는 952대, '04년에는 1,334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〈참고〉

중고농기계 품질보증필증 주요사항

- 부착위치 : 트랙터 본넷트카바 위쪽 중앙부위
- 필증규격 : 가로 9cm × 세로 6cm
- 필증재질 : 테이프 스티커
- 필증색상 :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
- 표기내용 : 품질보증번호, 품질보증자, 연락처(주소 및 전화번호),
품질보증관리 기관·단체명

<품질보증필증>

중고농기계 품질보증필증	
품질보증번호 :	
품질보증자 :	
연 락 처 :	
품질보증관리 : ○○○○ (농협 또는 유통협회)	

← 9cm →

↑ 6cm ↓